

부산국제자유도시의 조성과 법적 과제(토론문)

정 태 용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제자께서는 부산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부산국제자유구역으로 발전시킨 후 최종적으로 부산국제자유도시로 정착시키는 단계적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부산을 국제자유구역으로 하거나 국제자유도시로 할 때에는 이들 법률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산업물류도시에 관한 법률은 없으므로 새로운 법률을 구상해야 합니다. 발제문과 함께 “부산국제산업물류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요지를 보내 주셨는데,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미 입안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발제문에서는 “부산국제산업물류도시법”을 제정하는 것을 1안으로, “국제산업물류도시법”을 제정하는 것을 2안을 제시하셨는데, 아직 국가적으로 복수의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니만큼 “부산국제산업물류도시법”을 제정하는 1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의 발전전략에 맞도록 법안을 특화할 수도 있고, 국가와 부산의 역량을 집중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당연히 국가의 지원을 유도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이들의 내용이 국가의 지원을 유도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산광역시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며, 이러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특례를 인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무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발제문에는 부산국제물류도시가 강서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법안요지에는 부산국제물류도시의 위치나 범위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부산국제물류도시를 부산광역시 전체인지, 아니면 강서구 일원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부산국제물류도시가 강서구 일원에 한정된다면 법안의 내용에 많은 제약이 가해질 것입니다. 강서구 일원에 걸치는 부산국제물류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가 부산국제물류도시에 한정되지 않고 부산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특례가 얼마나 타당성을 가질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부산광역시장은 광역산업단지와 글로벌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투자진흥지구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지구의 개념이 적절하지만, 투자자에게 각종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지구의 지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를 면제하되, 그 외국인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자 할 때에는 체류지역확대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섬이므로 이 곳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야 하고, 이때에 비자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 제주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에는 섬이 아니므로 부산을 벗어나는 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완조치가 필요합니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교육제도에 관한 여러 특례규정이 있는데,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국제산업물류도시를 표방하는 이 법안에 국제자유도시와 같은 정도의 특례를 인정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더구나 국제산업물류도시가 부산광역시 전체가 아니라 부산광역시의 강서구 일원에 한정된다면 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진료소의 지정, 외국인의 의료기관개설 등 의료서비스의 증진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